

○ 본 해설지는 민주노총 법률원이 작성한 <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>중 주요내용을 발췌, 정리한 것입니다. 원자료는 충남지부 홈페이지 기타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# 2025년 법정 최저시급 10,030원

■ 2025년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10,030원, 주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(월 환산액)은 2,096,270원(월 209시간,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)입니다.

이는 작년 최저시급 9,860원 대비 1.7% 인상된 금액입니다.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(2021년 1.5% 인상), 올해 물가인상률 전망치 2.5~2.7%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.



■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2024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됨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. 즉,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, 식비, 숙박비, 교통비 등 노동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. 다만, 통화 이외의 것(현물)으로 지급하거나 소정근로시간(또는 소정의 근로일)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.

## 출산휴가·육아휴직 관련 바뀐 것

### [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적용 확대] (남녀고용평등법 19조 개정. 2025.2.23. 시행)

■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8세(초2)에서 12세(초6)으로 확대되었으며, 육아기 미사용기간을 두

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가능하게 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합니다.

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도 확장되어 △ 육아휴직의 경우 3회 분할하여 사용가능하며 △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사용 단위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고 △ 2019.10.1 이전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도 확대된 제도가 적용됩니다.

### [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확대]

(고용보험법 76조 및 시행령 개정)

■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중 5일이 유급이었고, 난임치료휴가는 무급이었습니다. 이를 △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20일 전체를 유급으로 하고, 난임치료휴가 중 2일을 유급으로 개정되었습니다. (2025.2.23. 시행)

■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으로 하면서 상한액(150만)과 하한액(70만원)을 두었는데 이를 개정하여 △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따라 차등하면서 상한액을 상향하였고 △ 출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와 한부모가족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을 상향하였습니다. (2025.1.1. 시행)

### [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]

(남녀고용평등법 18조 개정. 2025.2.23. 시행)

■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 △ 출산후 사용기한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됩니다.

## 사용자 ‘폭염·한파’ 보건조치 의무 추가

■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이 115건 발생하였고, 12명이 사망하였습니다. 급격한 기후변화가 노동자에게 심각한 유해 위험요인이 되었습니다.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폭염 및 한파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노동자에게 대한 보호방안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.

이에 올해부터 사용자의 보건조치 의무에 ‘폭염, 한파’에 의한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추가되었습니다. (산업안전보건법 39조 2025.6.1. 시행)

■ 기존에 없던 ‘산업재해근로자의 날’을 지정(매년 4월 28일)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적합한 행사, 예방교육,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합니다.